보도첨부자료

대환대출 인프라 구축방안

2022. 11. 14.

금 융 위 원 회
중 소 금 융 과

목 차

Ⅰ. 추진 배경 ····· 1

Ⅱ. 대환대출 시장 현황 ····· 2

Ⅲ. 대환대출 인프라 구축방안 ····· 3

1. 대출이동 시스템 구축 ····· 3

2. 시장 참여자·정보제공 확대 ····· 4

Ⅳ. 소비자 보호 및 리스크 관리 ····· 5

Ⅴ. 기대효과 ····· 7

Ⅵ. 향후 계획 ····· 8

Ⅰ. 추진 배경

□ 최근 **급격한 금리상승**으로 인해 금융회사로부터 대출을 받은 **금융소비자의 이자부담 증가**

* 한은 기준금리는 지난 1년여간 총 7회, 2.25%p 인상('21.8월 0.75% → '22.10월 3.0%), 은행권 가계대출 금리는 5.15%('22.9월 신규취급 기준)로 9년來 최고수준

○ 금리상승기에 **금융소비자의 이자부담을 경감**할 수 있는 다양한 **지원방안을 마련할 필요**

□ 그 일환으로, 금융소비자가 기존의 대출을 더 유리한 조건의 **대출로 쉽게 이동**할 수 있도록 **대환대출* 활성화** 지원

* 소비자가 이동하려는 금융회사가 기존 대출 회사에 원리금을 **대신(代) 상환(換)**

○ **기존 대출 금융회사**는 차주 유출을 막기 위해, **신규 대출 금융회사**는 차주를 유치하기 위해 **대출금리를 인하할 유인 발생**

○ **금융소비자**는 더 낮은 금리의 대출로 이동함으로써 **직접적으로 이자부담을 경감**

⇒ '22.7월 시행한 은행권 예대마진 공시와 함께, **시장 경쟁을 통한 대출금리 하락**을 유도하여 **소비자 후생을 개선**

< 대환대출 개념 >

Ⅱ. 대환대출 시장 현황

□ 현재 대환대출 시장은 **금융회사 간 인프라 미비, 제한적인 대환대출 상품 공급*** 등으로 충분히 활성화되지 않은 상황

* 대출비교 플랫폼과 제휴를 맺어 대환대출 전용상품을 취급 중인 은행은 3개에 불과

< 현재 대환대출 이용단계 >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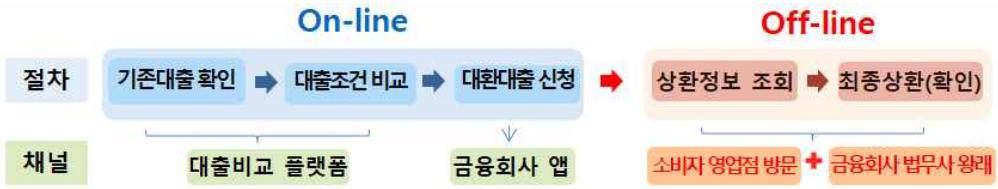

❶ **(대출이동 시스템 미비)** 기존대출 상환 절차를 오프라인으로 수행함에 따라 **소비자·금융회사의 비효율 발생**

- **금융소비자**는 기존 금융회사 영업점 방문이나 유선연락을 통해 대환대출에 필요한 정보의 **확인서류*를 전달해야 하는 불편 존재**

* 기존 금융회사에 대한 대출금액과 상환금액의 증빙을 위한 서류

- **금융회사**는 금융회사 간 기존대출 최종 상환을 처리하기 위한 **법무사 왕래 등으로 시간과 비용 소요**

❷ **(시장 참여자 및 정보 제한)** 대환대출 **비교 플랫폼 운영회사, 참여 금융회사, 기존대출 정보**가 제한되어 소비자 편익 제약

- 현재 핀테크사만 대출비교 플랫폼을 운영 중이며 **개별 제휴를 맺은 금융회사의 대출만 비교·추천**하여 소비자 선택권이 제약

- 또한 기존대출 상환에 따른 **수수료** 등 대환대출 시 필요한 소비자 대출정보는 **대출비교 플랫폼 내에서 확인이 제한***

* 주요 플랫폼이 **마이데이터**('22.1월~)로 기존대출 정보를 제공 중이나 범위가 한정

➡ **대환대출 인프라 구축**을 통해 대환대출 시장을 활성화하여 금융소비자의 **이자부담 경감을 지원**

Ⅲ. 대환대출 인프라 구축방안

〈 기 본 방 향 〉

◈ 금융회사 간 **대출이동 시스템 구축**을 통해 **온라인·원스톱 대환대출 프로세스 구현**

◈ 대환대출 **시장 참여자와 정보 제공범위의 확대**를 통해 소비자의 **편리한 대환대출 지원**

< 온라인 대환대출 인프라 이용 흐름도 >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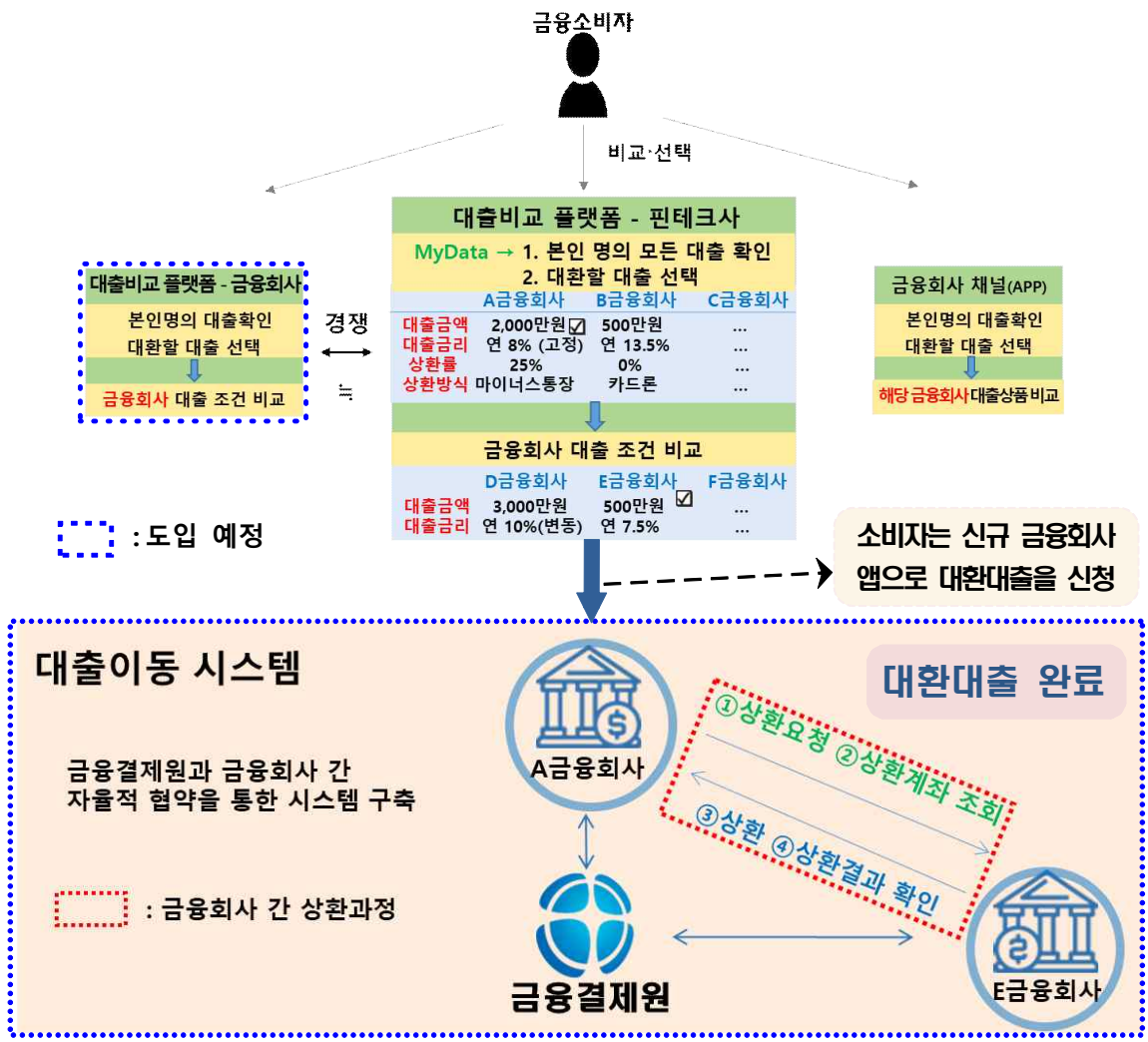

1 대출이동 시스템 구축

◈ 개인대출을 대상으로 **은행, 저축은행, 여전사**가 참여하는 **대출이동 시스템을 구축**하여 **온라인·원스톱 대환대출** 구현

□ **(주요내용)** 금융회사 간 온라인 **대환대출 이동시스템 구축**

○ 대환대출 **상환 요청, 필요정보*** **제공, 최종 상환 확인** 등 절차를 금융결제원 망을 통해 중계하여 **상환절차를 완전히 전산화**

* 상환필요금액(원리금 잔액, 수수료 등 기타비용), 상환계좌, 대출약정금액 등

< 대출이동 시스템 구축 전후 >

□ **(범위) 은행, 저축은행, 여전사**가 취급하는 대출상품 간 이동

○ 여신거래약관 등에 따라 **표준화된 대출**로서 담보권 이전 등 **추가절차 없이 온라인으로 이동** 가능한 대출에 우선 적용

○ 대환대출을 취급하는 **주요 금융업권***이 소비자에게 **다양한 대출조건을 제공**할 것으로 기대

* **대부업권**(금결원 망 미이용, 신용심사 방식 상이), **보험업권**(관련대출 규모 미미) **미참여**

□ **(효과)** 금융소비자와 금융회사의 불편이 해소되어 **대환대출 업무처리의 효율성이 증진**

○ 소비자·금융회사의 **오프라인 방문 등 없이** 대환대출 절차가 완료되어 소비자의 **시간과 비용 절감 예상**

2 시장 참여자·정보제공 확대

◈ 대환대출 **시장 참여자**를 확대하고 대출 관련 **정보를 충분히 제공**하여 소비자의 **편리한 대환대출 구현**

□ **(주요내용) 대출비교 플랫폼 운영주체를 확대하고** 플랫폼 내 소비자에게 제공되는 **대출정보 범위를 확대**

① 현재의 핀테크사에 추가하여 **금융회사*도 대출비교 플랫폼을 운영**할 수 있도록 하여 소비자 선택권 확대

* 비교·추천체계 검증 등 대출비교 플랫폼 운영방향을 협의하여 **겸영업무**로 영위

- 대출비교 플랫폼 외에도 기존의 **개별 금융회사 창구**(App)를 통해 대출이동 시스템을 이용 가능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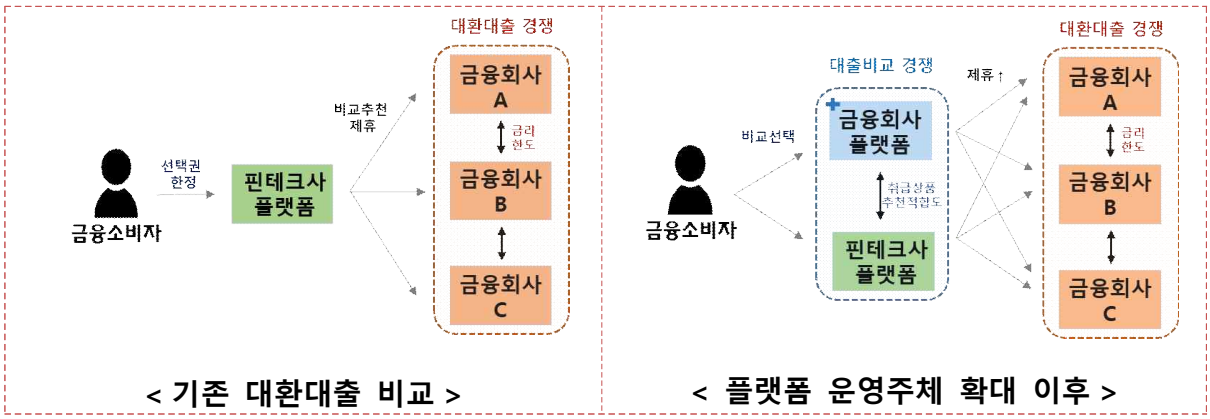

② 대환대출에 따른 비용(수수료 등)과 편익(이자부담 감소분)을 정확히 판단하는 데 필요한 **대출정보**(각종 수수료 등)를 **소비자에게 추가적으로 제공**(제공범위, 방법 등은 금융권과 협의)

□ **(효과) 플랫폼 간 경쟁 강화**와 금융회사의 **대출이동 시스템 참여 확대**에 따라 대환대출 **상품 공급 증가**

⇒ 소비자가 **충분한 선택권**과 **정확한 정보**에 기반한 대환대출 실행

Ⅳ. 금융소비자 보호 및 리스크 관리

□ **(소비자 보호)** 플랫폼이 금융회사로부터 수취하는 수수료 등과 무관하게 **최적의 상품을 추천**하도록 하는 등 **소비자 보호장치 마련**

○ 금융회사의 대출비교 플랫폼 운영에 따른 **이해상충 방지**를 위해 **비교·추천 알고리즘 검증을 강화***

* **금소법 상 코스콤 검증** 외에도 추가 검증주체에 의한 교차검증, 주기적 재검증 등 도입

○ 다수 대출상품 조회에 의한 **소비자의 신용점수 하락을 방지**

※ 현재 대출비교 플랫폼의 금융회사·CB사 제휴를 통해 다수 대출 비교조회도 1회로 인정되고 있으며 향후 **금융회사의 대출비교 플랫폼에도 동일 적용**

□ **(리스크 관리)** 금융업권 간 **대출자산의 급격한 쏠림현상, 자금운용의 단기화** 등 대환대출 활성화에 따른 금융시장 리스크의 관리를 위해 **시범운영 기간**을 도입

○ **시스템의 연착륙**을 위해 시범운영 기간 중 **이동시스템을 이용**한 금융회사의 **대환대출 리스크 관리방안** 도입을 검토

○ 이후 운영성과와 **플랫폼 관련** 리스크 관리의 **국제기준 논의 동향** 등을 고려하여 **운영방안 조정** 검토

□ **(대출규제 합리화)** 금융업권 간 **대출규제 차이**를 합리적으로 조정

○ 제2금융권 대출규제를 중심으로 **업권 간 형평성을 제고**하는 방향으로 **규제 합리화** 추진

< 대출규제 차이 개선 예시 >

※ 여전사는 은행이 CB사에 등록한 소득정보를 사용하여 소득을 추정하는 경우에도 **소득의 80%, 최대 5천만원만 인정**

⇒ **은행을 통해 CB사에 등록한 1년 이내 증빙소득**은 100% 인정하도록 개선

Ⅴ. 기대효과

◈ 시장경쟁을 통해 **금융소비자의 이자부담 경감 등, 금융소비자의 편익 증진 효과** 기대

□ **(소비자)** 편리한 대환대출 과정을 통한 이자부담 경감 등 **편익이 크게 증대될 것으로 기대**

○ 단발성이 아닌 **지속적인 금리경쟁** 시스템이 마련되어 **대출금리가 하락**하는 효과

○ **대출정보 부족·대출이동 불편**으로 기존 대출을 유지하는 **잠금효과*를 해소**하여 소비자의 **선택권과 후생 개선**

* 다른 상품으로 전환하는 비용(switching cost)이 높아 기존 구매선택을 유지

□ **(금융회사)** 플랫폼 운영 등 **새로운 영업기회 창출**, 대출업무 처리의 효율성 증대를 통한 **비용 절감 효과**

○ 대출이동이 용이해져 소비자의 **신규대출 실행이 증가**하고, **대환업무 수행 상 발생하는 비용*의 절감**이 예상

* 상환금액 증빙서류 징구 및 처리, 대출상환 등을 위한 수작업 및 처리비용

□ **(핀테크社) 사업영역과 수익 창출이 확대**되고, **플랫폼의 경쟁력이 장기적으로 증대**되는 효과

○ 기존 신규대출 비교시장 外 **새로운 비즈니스 모델 발굴,** 대환대출 중개 증가를 통한 **수수료 수익 증가**

○ 네트워크 효과*가 중요한 플랫폼 시장 특성상 **신규 고객의 증가는 장기적인 경쟁력 개선 효과**

* 사용자의 수가 해당 상품의 소비 편익을 증가시킴 → 상품 수요 역시 증가

Ⅵ. 향후 계획

□ **'23.5월**(잠정) **중 운영 개시**를 목표로 대출이동 시스템 구축 추진

○ 11월 內 이해관계자(금융업권·핀테크·금결원 등) 참여하는 **TF를 구성**하여 세부적인 의견 조율*

* 대출이동 요건·방식 등 인프라 운영방향과 업권별 대출 경쟁력 제고방안 등

- TF 논의결과를 바탕으로 **'22년 내 대출이동 시스템 구축* 착수**

* 금결원·금융회사 간 자율 체결한 공동 업무협약 내용에 따라 구축 추진

○ 시스템의 보안성과 완결성을 보장하기 위해 금결원 주도로 금융회사별 IT인력을 동원하여 **약 6개월의 구축기간 필요**

추진과제	일정
① TF운영 및 운영방안 사전 협의 ※ 금융권, 핀테크 등 참여기관 간 공동협의체 구성(수수료, 이동시스템 운영방안 등 협의)	**'22.11월~**
② 전산개발 등 실제 시스템 구축작업 * 회사별 전산개발 실무자 회의, 시스템 개발, 통합 테스트 등	**'22년 내 착수**
③ 시스템 운영 개시	**'23.5월**(잠정) **목표**
④ 시범운영	**운영 개시 후**

□ 향후 운영 성과와 리스크 요인을 점검하고 국제적 논의 등을 감안하여 필요시 시스템 **운영체계 개선 검토**

참고 1 핵심 Q&A

1. 대환대출 이동시스템에 50여개 금융회사가 참여하는 이유는?

□ 금융권과 협의한 결과, 금융회사의 규모, 건전성 등을 고려하여 각 금융업권별로 **시스템 구축 역량을 갖춘 대형사** 위주로 총 50여개 금융회사가 참여 의사를 표명

○ 참여 회사들의 금융업권별 **대출시장 점유율이 상당히 높아** 충분한 대환대출 활성화 효과가 기대

2. 대환대출 이동시스템의 우선 구축대상을 선정한 기준은?

□ 대출이동 시스템 구축대상은 ① **구축의 효율성**과 ② **소비자 편익**을 감안하여 선정

□ **개인 신용대출**은 **이동시스템 구축이 상대적으로 간편**하여 **조속한 구축이 가능**

○ 또한 全금융업권에서 다양한 조건의 상품을 제공*하여 **금융소비자의 편익 증진이 클 것으로 기대**

* 마이너스통장, 직장인대출, 카드론 등

□ **담보대출**의 경우 금융회사 간 **담보권의 이전절차**를 온라인으로 구현하기 곤란

○ 대환대출에 필수적인 **근저당권 이전절차***는 오프라인 수행이 불가피하여 **온라인 대환이 불가**

* 기존 대출회사의 말소서류 발급, 법무사의 관할 등기소 제출, 등기관의 확인 등

□ **기업대출**의 경우 **심사절차가 복잡**(현장심사, 사업성 평가 등)하여 **비대면 대환대출 진행이 불가**

○ 시스템을 구축하여도 대환대출 완료에 **수일 이상의 시간이 소요**되어 소비자의 편익 증진이 미미

3. 대출비교 플랫폼을 운영하는 핀테크사에 대한 금융회사의 의존이 심화되거나, 핀테크사가 과도한 수수료율을 산정하는 등의 문제에 대한 대안은?

□ 금융권의 핀테크업계에 대한 의존 문제는 **금융회사의 대출비교 플랫폼 운영을 허용하여,**

○ 플랫폼 다변화에 따른 **시장경쟁을 통해 완화**될 것으로 예상

□ 중개 수수료 체계는 대출비교 **플랫폼 운영주체**와 대출상품 **공급회사**가 참여하는 **협의체를 구성하여,**

○ 플랫폼 중개 수수료의 **합리적인 산정방안** 등을 논의할 계획

4. 금융회사가 대출비교 플랫폼을 운영하는 것과 관련한 이해상충의 문제는 없는지? 국내외 기존 사례가 있는지?

□ 금융회사들은 마이데이터, 기존 금융업 부문 전문성을 활용한 **최적 상품 추천**을 통해 **플랫폼 고객을 유치**하는 전략을 추진

○ 금융회사가 타사상품을 포함해 비교·추천을 제공하는 경우는 ①**카드사의 신용카드 비교·추천** 서비스, ②**은행의 예금 비교·추천** 서비스 등이 있음

※ 혁신금융서비스 지정을 통해 운영 (①: `22.9월 지정, ②: 신청 접수 후 검토 중)

□ 현재 **핀테크사 플랫폼**에 대해 **비교·추천체계**(알고리즘)에 대한 신뢰할 수 있는 기관의 **검증** 등 규제(금소법)를 실시

○ 자사 상품 판매 유인에 따라 이해상충 가능성이 더 큰 **금융회사 플랫폼**에는 이러한 **규제를 강화***할 계획

* 현 검증기관인 코스콤 외의 추가 기관에 의한 교차검증, 주기적인 재검증 의무화 등

참고2 대환대출 이동시스템 구축 일정(안)

추진사항	D	D+1월	D+2월	D+3월	D+4월	D+5월	D+6월
T/F 구성 및 Kick-Off							
업무요건 및 전산설계서 설명회							
IT환경 구성(자원 도입 및 회선 구축)							
전산개발(결제원, 금융기관)							
통합테스트							
실시							